

(1)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

① 금융투자소득 신설(소득법 §4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의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합소득 ○ 퇴직소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도소득 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금융투자소득 ○ (좌 동)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소득 성격·손실가능성을 감안, 분류과세 도입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(소득법 §4·17, 조특법 §91의2)

현 행				개 정 안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기구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 -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·평가 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·환급 <추 가> <input type="checkbox"/>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○ 적격 집합투자기구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요건 추가 ○ (좌 동) ④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 금액, 분배금, 유보금 내역 신고 ○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			
구 분		계좌형	회사형**		구 분	소득	
분배·환매		배 당				분 배	금 용 투자소득
국 내 상 장	주식형 ETF	과세 제외	대주주	양 도	원천: 금융투자소득		금 용 투자소득
	기 타	배당	소액주주	과 세 제 외	원천: 금융투자소득 외	배 당	
양 도	비상장	배당	대주주	양 도	환매·양도	금 용 투자소득	
			소액주주	과 세 제 외			
국 외	등록	배당	양 도				
	미등록	양도	양 도				
* 투자신탁, 투자합자조합, 투자익명조합 ** 투자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							

○ 비적격 집합투자기구			○ 비적격 집합투자기구	
구 분	계약형	회사형	구 분	소 득
분배·환매		배 당	분배	배 당
양도	소득원천별 과세 (도관과세)	대주주 양도	환매·양도	금 용 투자소득
		소액주주 과세 제외		
장내		양 도	※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(조특법 §91의2 신설)	
장외			○ 국외 집합투자기구	
○ 국외 집합투자기구			구 분	소 득
구 분	계약형	회사형	분배	배 당
분배·환매		배 당	환매·양도	금융투자소득
양도	배 당	양 도	< 삭 제 >	
□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· 평가손익은 과세제외				

<개정이유>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 투자소득 손익통산·이월공제를 허용하고,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(소득법 §87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용어의 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주식등)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지분증권·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제외) ① 「자본시장법」 §9②의 집합투자증권 및 ②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, 「선박투자회사법」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⇒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○ (채권등)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채무증권·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, 「상법」에 따른 파생결합사채, 조건부자본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 ○ (양도) 자산의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계좌간 이체,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(소득법 §87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익신탁법」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○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
<개정이유>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(소득법 §87의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 text-align: center;"> $\text{감면액} = \text{㉠} \times \frac{(\text{㉡} - \text{㉢})}{\text{㉣}} \times \text{㉤}$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㉣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㉤ 감면율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(소득법 §87의5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,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금융투자소득금액 -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)* - 금융투자이월결손금 *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계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이월결손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* * 예정·확정신고, 결정·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

<개정이유>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(소득법 §87의6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=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× 세율 ②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=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- 감면세액 ③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=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+ 「국세기본법」상 가산세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(소득법 §87의7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계약증권(「자본시장법」 §4⑥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- 집합투자증권의 환매·양도로 발생한 소득 *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·양도 포함 ⑤ 국내·외 파생결합증권(「자본시장법」 §4⑦, ELW 포함)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(「자본시장법」 §5)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·배당소득으로 과세

※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·배당·양도소득 유지 (법인법 §93, 소득법 §119)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 (이자·배당소득 제외)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(소득법 §87의8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금액 = ①+②+③+④+⑤+⑥ ○ ①주식등소득금액, ②채권등소득금액 ③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, ④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, ⑤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, ⑥파생상품소득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결손금 ○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

<개정이유>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⑩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

(소득법 §87의9, §87의10, §87의11, §87의1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등소득금액 = 주식등양도가액 - 필요경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등소득금액 = (채권등양도가액 - 보유기간 이자) - 필요경비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=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- 필요경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○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

<개정이유>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⑪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

(소득법 §87의1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등·채권등·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= ① + ② + ③</p> <p>① 취득가액*(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,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) * 평가방법 : (주식) 이동평균법, (채권) 개별법·이동평균법 중 선택</p> <p>② 자본적 지출액(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)</p> <p>③ 양도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'22년까지 비과세 되는 ①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, ②소액주주가 K-OTC를 통해 양도 하는 중소·중견기업 비상장주식 ○ (의제취득가액) Max('22년 과세기간 종료일*의 가액, 실제 취득가액) <p>* 단,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</p>

<개정이유>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(소득법 §87의1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요건)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○ (취득가액 조정)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○ (증여세 필요경비 산입)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○ (비교과세)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: ① + 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× 기업상속공제 적용률 ②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× (1 - 기업상속공제 적용률)

<개정이유>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⑬ 집합투자기구·파생결합증권·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

(소득법 §87의15, §87의16, §87의17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= ① + ②</p> <p>①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: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</p> <p>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: 양도가액,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</p> <p>※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</p> <p>○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, 회수한 금전의 가액,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·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</p> <p>※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소득금액</p> <p>○ 선물, 선도, 스왑,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,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</p>

<개정이유> 집합투자기구·파생결합증권·파생상품소득금액의
계산방법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⑭ 기준시가 산정(소득법 §87의18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시가 계산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장주식: 「상증세법」 §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(평가기준일 이전·이후 2개월은 양도일·취득일 이전 1개월로 봄) ○ 비상장주식·신주인수권·채무증권 : 「상증세법」 §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○ 파생결합증권·파생상품·수익증권(수익권) : 「상증세법」 §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

<개정이유>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(소득법 §87의19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내 상장주식,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, K-OTC를 통한 중소·중견기업 비상장주식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기타 금융투자상품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= Min(금융투자소득금액, 기본공제금액)

<개정이유>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⑩ 금융투자소득세 세율(소득법 §87의20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주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 미만 보유 非중소기업 주식: 30% - 일반: (3억 원 이하) 20%, (3억 원 초과) 25% ○ 소액주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주식 : 10% - 일반 : 20% 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(과세표준 3억 원 이하) 20% (과세표준 3억 원 초과) 25%
<input type="checkbox"/> 펀드 환매·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소득세 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2천만 원 초과) 14~42% ○ (2천만 원 이하) 14% 	
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% (탄력세율 10%) 	

<개정이유> 조세중립성,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

(소득법 §87의21, §87의22, §87의23, §87의2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①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, ②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○ (방법)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○ (기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: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(半期)의 말일부터 2개월 ii)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: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①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, ②환급세액이 있는 자, ③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, ④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·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○ (방법)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

<개정이유>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·경정(소득법 §87의25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정신고,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○ 예정신고,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·오류 ○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·오류 ○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·확인할 수 없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관청의 결정·경정 내용의 통지 의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내용에 탈루·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,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

<개정이유>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⑭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(소득법 §87의26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징수 ○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·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○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정·확정신고 납부세액,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기산금 등에 충당

<개정이유>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(소득법 §127~129 개정, §148의2·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천징수의무자)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금융회사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라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○ (대상소득)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○ (기간) 반기별*(1.1.~6.30. / 7.1.~12.31.) 원천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도 해지 계좌 : (상반기) 1.1일 ~ 계좌해지일 (하반기) 7.1일 ~ 계좌해지일 ○ (세율) 20%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 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손익계산)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공제 신청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- 잠정원천징수세액(수익×20%) 인출 제한 ② (결손금 이월)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③ (세액납부)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도 해지 계좌 :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

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

○ (원천징수영수증)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

- 다만, 반기 마지막 달*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

* 중도 해지 계좌 :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

○ (결손금통지서)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

- 다만, 반기 마지막 달*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투자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

* 중도 해지 계좌 :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①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(소득법 §155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</p> <p>○ (대상소득)</p> <p>- 이자·배당소득 <추 가></p> <p>○ (원천징수 시기)</p> <p>- 이자·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<신 설></p>	<p>□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</p> <p>- (좌 동)</p> <p>- 금융투자소득</p> <p>- (좌 동)</p> <p>-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(§148의2, §148의3 준용)</p> <p>※ §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(손익통산 불가)</p>

<개정이유>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(소득법 §164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제출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자)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○ (대상소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자·배당소득,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, 근로소득, 퇴직소득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기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>- 금융투자소득</p> <p>- (좌 동)</p> <p>-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</p>

<개정이유>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(소득법 §174의2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- K-OTC에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-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·외 거래 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내역 제출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함

<개정이유>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

<적용시기> '23.1.1.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

㉔ 증권거래세율 인하(증권거래세법 §8, 시행령 §5)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거래세 세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코스피) 0.1%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농어촌특별세 0.15% 별도 ○ (코스닥) 0.25% ○ (코넥스) 0.1% ○ (비상장·장외거래) 0.45%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율 단계적 인하($\Delta 0.1\%p$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'21~'22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'23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코스피*</td> <td>0.1%</td> <td>0.08%</td> <td>0%</td> </tr> <tr> <td>코스닥</td> <td>0.25%</td> <td>0.23%</td> <td>0.15%</td> </tr> <tr> <td>코넥스</td> <td>0.1%</td> <td>0.1%</td> <td>0.1%</td> </tr> <tr> <td>기 타</td> <td>0.45%</td> <td>0.43%</td> <td>0.3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농어촌특별세는 0.15% 현행 유지</p>				구분	현행	'21~'22년	'23년	코스피*	0.1%	0.08%	0%	코스닥	0.25%	0.23%	0.15%	코넥스	0.1%	0.1%	0.1%	기 타	0.45%	0.43%	0.35%
구분	현행	'21~'22년	'23년																					
코스피*	0.1%	0.08%	0%																					
코스닥	0.25%	0.23%	0.15%																					
코넥스	0.1%	0.1%	0.1%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0.45%	0.43%	0.35%					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< 소득세 및 법인세 >

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(소득법 §2의3 신설, 법인법 §5 등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의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원칙) 수익자 <input type="checkbox"/> (예외) 위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○ (과세방식)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*인 경우 *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,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·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<input type="checkbox"/>~<input type="checkbox"/>의 신탁(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) 중 수탁자*가 선택 (위탁자가 신탁을 통제·지배하는 경우 제외) *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신탁법」§3에 따른 목적신탁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신탁법」§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신탁법」§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·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(시행령 규정) ○ (과세방식)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*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

<개정이유>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